

위임장은 반드시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이 각각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.

※ 위임받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을 업무담당자가 인지할 경우 업무처리 불가합니다. ※
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4일부터 운전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.

위 임 장

위임하는 사람 (원 신청인)	성 명	생년월일
	위임사유	전화번호
	주 소	
위임받는 사람 (대리인)	성 명	생년월일
	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	전화번호
	주 소	
위임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운전면허시험, 운전면허(연습운전면허)증 신청 및 수령 등 운전면허 관련 제반 업무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관련 제반 업무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운전면허증 본인 수령의 법적 근거</p> <p>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(운전면허증의 수령)에 따라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. 다만,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○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○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○ 군 복무 중(「병역법」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, 사병으로 한정한다)인 경우 <p>※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직접 준비해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.</p>	

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임내용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담당자가 위임내용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하는 사람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동의

미동의

(위임받는 사람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: 운전면허 시험접수, 운전면허(연습운전면허)증 발급(재발급), 국제운전면허증, 갱신, 적성검사, 행정정보 공동이용, 과태료 부과 등 운전면허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
-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: 위임받는 사람 인적사항(성명, 생년월일,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, 전화번호, 주소)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운전면허증 유효기간까지
- 동의 거부권리 안내: 위임받는 사람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위임내용에 대한 업무처리가 제한됩니다.
- 위임받는 사람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

동의

미동의

년 월 일

위임하는 사람

(서명 또는 인)

위임받는 사람

(서명 또는 인)